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09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이성운
이원택 · 한병도 · 이춘석
안호영 · 송기현 · 임미애
허영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증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률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30명 이하”를 “3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5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p> <p>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u>30명</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 ④ (생략)</p> <p>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p> <p>⑥ · ⑦ (생략)</p>	<p>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35명</u> 이하-----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30명</u> 이 <u>내</u>----- -----.</p> <p>⑥ · ⑦ (현행과 같음)</p>